

서울 행정 법 원

제 1 1 부

판 결

사 건 2008구합32225 건강보험료부과처분취소
원 고
피 고
변 론 종 결 2009. 9. 23.
판 결 선 고 2009. 10. 28.

주 문

1. 피고가 2007. 8. 17. 원고에 대하여 한 건강보험료 215,073,7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처분의 경위

가. 피고는 2007. 7. 11. 건설업체인 원고 회사의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각 실시하면서 원고 회사로부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, 일용근로자 노임대장 등의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검토한 결과, 2004. 5.부터 2007. 4.까지 사이에 원고 회사의 사업장에 1개월 이상 고용되어 근무하였던 박영두 등 일용근로자 451명(이하 '이 사건 근로자들'이라 한다)이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가입되어 있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였다.

나. 피고는 이 사건 근로자들이 원고 회사 사업장의 근로자로서 국민건강보험에 직장가입자로 가입되어야 함에도 지역가입자로 잘못 가입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각 고용일에 소급하여 직장가입자 자격을 부여하고, 2007. 8. 17.(소장 청구취지에 기재된 처분일자인 2007. 8. 20.은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)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직장가입자로서의 정산보험료에 2007. 8.분 정기보험료를 추가하여 보험료 합계 215,073,760원을 부과고지하였다(이하 '이 사건 처분'이라고 한다).

【인정근거 : 다툼 없는 사실, 강제1, 2, 3호증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】

2.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

가. 원고의 주장

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.

1) 근로자 비해당

원고 회사는 원도급인들로부터 공사를 하도급받아 그 공사 중 일부를 독립되어 공사를 담당하는 시공참여자(일명 독립집장)들에게 다시 재하도급을 주었고 시공참여자들이 독자적으로 일용근로자들을 고용하여 공사를 진행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들은 원고 회사와 사이에 직접 고용관계를 맺은 바가 없어 결국 원고는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보험료의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게 해당하지 아니한다(특히 이 법원의 노동

부 고용서비스 지원과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근로내역확인 신고사실이 확인되는 근로자들과 이 사건 처분의 대상이 된 이 사건 근로자들의 수가 차이 난다).

2) 1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 등 포함

피고는 이 사건 근로자들 중 남궁기원이나 공복식의 경우에서처럼 1개월 미만의 기간만 근무한 일용근로자나 중간에 근로관계가 깨어진 경우까지도 모두 포함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.

나. 관계 법령

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.

다. 판단

1) 국민건강보험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가 보험료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직장가입자란 사용자 본인과 그 사용자와 고용관계를 맺고 보수에서 보험료를 공제할 수 있는 근로자 등에 한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(대법원 2008. 5. 29. 선고 2006두8419 판결 참조).

2) 살피건대, 강제4호증의 1, 2, 을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노동부 고용서비스 지원과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, ① 원고가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하여 일용노무자지급명세서를 작성하였는데, 그 일용노무자지급명세서에는 원고가 이 사건 근로자들의 근무일자를 일일이 파악하고 그 근태를 확인한 다음 그들의 노무비 단가에 따라 각자의 노무비를 따로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, ② 원고가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다는 내용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근로내역확인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 및 관할 노동사무소에 제출한 사실, ③ 원고가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노무비를 인건비 항목으

로 회계처리한 사실은 인정된다.

그러나, 앞서 든 증거 및 갑제6호증의 1 내지 6, 갑제10, 11호증, 갑제17, 18, 19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영등포세무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증인 이경용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, 즉 ① 원고는 하도급받은 르메이에르 종로 타운현장 등의 공사 중 일부에 대하여 이은창 등 시공참여자들과 ‘시공참여책임약정서’라는 제하의 계약을 체결하였는데, 이러한 계약은 공사기간, 약정금액, 대금의 지급방식(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시공물량에 대하여 확인된 물량의 95% 이내에서 익월 15일까지 지급하되 5%의 금액은 하자보수 처리비용으로 지급을 유보하기로 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하였다), 정산방법(실시공 수량 정산 조건)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점, ② 원고와 시공참여자들 사이의 이러한 재하도급계약은 ‘건설공사 하도급계약’이라는 제하의 계약으로 체결되기도 하였는데, 이러한 계약은 원고가 실시공 물량 정산을 기준하여 월 1회 하자보수금 10%를 제외한 90%의 공사금액을 지급하는 등의 내용으로 기본적인 대금지급조건을 규정하고 있으며, 경우에 따라서는 자재와 장비 등의 비용 분담에 관하여도 규정하고 있는 점(소모자재를 제외한 자재는 원고 측에서 공급하며, 장비비는 양측이 50%로 분담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하여졌다), ③ 원고와 시공참여자들 사이에 체결된 위 각 계약에는 근로자의 임금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데, 이는 근로자의 임금은 원고가 시공참여자들에게 지급하는 공사대금에 당연히 포함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되는 점, ④ 특히 위 건설공사 하도급계약 중 일부에는 ‘작업인원 미충원으로 공정차질시 원고 측에서 근로자들을 투입한 후 나중에 정산처리한다’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기도 한데, 이는 원고가 이 사건 근로자들과 고용관계를 맺지 아니하였음을 전제로 하여, 근로자가 충원되지 아니하여 공사

수행에 차질을 빚는 만약의 경우를 대비하여 위 계약의 내용에 포함된 것으로 보이는 점, ⑤ 이러한 계약에 따라 원고는 이은창 등 시공참여자에게 실제로 공사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, ⑥ 원고와 사이에 시공참여계약을 체결한 시공참여자들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원고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은 후에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었고, 이로 인하여 원고는 시공참여자들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한 다음 이를 비용으로 처리하기 위해 일용노무자지급명세서,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을 각 작성하고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노무비를 인건비 항목으로 회계처리하여 그에 따른 법인세 신고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, ⑦ 원고가 이 사건 근로자들의 근무일자를 파악하고 그 근태를 확인한 이유는 시공참여자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하도급대금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노무비의 정산 및 지급을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, ⑧ 이 사건 근로자들의 대부분이 원고와 사이에 고용관계를 맺지 아니하였음을 전제로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에 가입한 점, ⑨ 원고가 이 사건 근로자들과 고용관계를 맺었는지 여부는 이를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을 한 피고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, 을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이 사건 근로자들 사이의 고용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.

3) 소결론

따라서, 원고가 이 사건 근로자들과 고용관계를 맺고 그들의 보수에서 건강보험료를 공제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는 점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,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, 위법하다 할 것이다.

3. 결론

그렇다면,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다.

재판장 판사 서태환 _____

 판사 송민경 _____

 판사 김선아 출산휴가로 서명날인 불능

 재판장 _____

관계법령

◆ 국민건강보험법 (2007. 12. 14. 법률 제86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

제3조 (정의)

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1. "근로자"라 함은 직업의 종별에 불구하고 근로의 대가로서 보수를 받아 생활하는 자(법인의 이사 기타 임원을 포함한다)로서 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과 교직원을 제외한 자를 말한다.
2. "사용자"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.
 - 가. 당해 근로자가 소속되어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
3. "사업장"이라 함은 사업소 또는 사무소를 말한다.

제6조 (가입자의 종류)

- ① 가입자는 직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로 구분한다.
- ②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은 직장가입자가 된다. 다만,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.
 1. 1월 미만의 기간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
- ③ 지역가입자는 가입자 중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자를 말한다.

제10조 (자격득실의 확인)

- ① 가입자의 자격의 취득·변동 및 상실은 제7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의 취득·변동 및 상실의 시기에 소급하여 효력을 발생한다. 이 경우 보험자는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.

제62조 (보험료)

- ① 공단은 건강보험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의 납부의무자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한다.

제63조 (보수월액)

- ① 제62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보수월액은 직장가입자가 지급받는 보수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되,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상·하한을 정할 수 있다.
-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월액의 산정 및 보수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사용자의 보수월액의 산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67조 (보험료의 부담)

- ①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직장가입자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자가 각각 보험료액의 100분의 50씩 부담한다. 다만, 직장가입자가 교직원인 경우의 보험료액은 그 직장가입자가 100분의 50을, 제3조

제2호 다목에 규정된 자가 100분의 30을, 국가가 100분의 20을 각각 부담하되, 제3조 제2호 다목에 규정된 자가 그 부담액의 전액을 부담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부족액을 학교에 속하는 회계에서 부담하게 할 수 있다.

1. 직장가입자가 근로자인 경우에는 제3조 제2호 가목에 규정된 자
제68조 (보험료의 납부의무)

①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사용자가 납부한다.

③ 사용자는 직장가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그 달의 보험료액을 그 보수에서 공제하여 납부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직장가입자에게 그 공제액을 통지하여야 한다. 끝.